2015년부터
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!

❖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? **OK**

❖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재등록? **OK**

❖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 유지? **OK**



❖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

–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

–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

❖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

– 대상 :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

– 절차 :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

❖ 주민등록 신고방법

– 절차 : 국내·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·출국할 경우 신고

　　* 해외이주신고(외교부)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

– 장소 : 거주지 읍·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

※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

❖ 시행일

– 2015년 1월 22일부터

행정자치부